

청주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0가단2260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안규리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호

변론 종결2022. 7. 21.

판결 선고2022. 8.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130,481,60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481,6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5. 7. 청주지방법원에 C의 미지급 물품대금채무 130,481,603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9. 5. 30. 확정되었다.

나. C는 2019. 1. 15. 피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D)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용인시 처인구 E 도로 594m²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9. 1. 25. 피고 앞으로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1299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부동산들에는 2012. 8. 30. 채권최고액 24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인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4. 7. 25.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인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각 마쳐진 상태였다.

라. 한편, 별지 목록 제5, 7,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9. 25.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F인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9. 1. 25. 말소되었다(접수번호 제12992호).

마. C에 대한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20가합12212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1. 7. 21.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고, 2022. 5. 12. 수원고등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해 공동담보의 부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수원고등법원 2021나20091), 위 항소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채무자 C는 2019. 1. 15.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해의 의사로 수익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C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채무 130,481,60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매매계약 전에 발생한 원고의 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나. 사해행위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그 사해성 유무, 즉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었거나 심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처분행위 당시의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각 총액을 산정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가려야 하는데,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등 참조). 또한 회사의 채무초과 상태란 회사가 실제 부담하는 채무 총액과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기재된 명목상 부채 및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27847 판결 참조).

3) 소극재산 관련 사건(수원고등법원 2021나20091)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591,260,899원을 그대로 인정한다(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통해 전액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고려하지 않는다. 원고도 2022. 7. 20.자 준비서면을 통해 위 금액을 소극재산액으로 주장하였다).

3) 적극재산 가) 을 제6, 12,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9. 1. 15. 당시 아래 표 기재 '매출처'란 기재 매출처에 대하여 아래표 '채권액'란

기재 액수의 매출채권을 갖고 있었고, 그때부터 추가 매출 및 대금 회수 거래가 이루어져 2019. 6. 30.까지 아래 표 '회수액'란 기재 액수의 대금을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상당한 대금이 회수된 점에 비추어 아래 표 기재 매출채권 합계 766,568,622원은 C가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매출채권은 적극재산에 포함된다.

1	G	312,444,360	162,661,635	2
2	H	45,046,100	83,332,535	3
3	I	63,627,398	70,000,000	4
4	J	83,021,660	66,988,005	5
5	K	33,330,600	43,817,918	6
6	L	125,940,838	45,000,000	7
7	M	6,839,364	13,164,540	8
8	N	23,008,870	23,008,870	9
9	O	3,452,434	3,452,434	11
10	P	16,337,935	11,000,000	12
11	Q	4,078,300	4,078,300	15
12	R	4,971,000	4,971,000	16
13	S	8,332,070	8,332,070	17
14	T	14,566,762	6,173,303	18
15	U	8,247,260	6,000,000	19
16	V	5,896,000	5,896,000	20
17	W	3,026,500	3,025,000	23
18	X	2,443,600	2,443,600	25
19	Y	1,369,291	1,369,291	27
20	Z	528,000	528,000	28
21	AA	60,280	60,280	33
합계	766,568,622	565,302,781		

나) 원고는, '거래처 원장(을 제16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후 G의 경우 81,813,207원의

추가 매출이 발생하였고, H의 경우 38,286,435원의 추가 매출이 발생하였는데, 모두 2019. 2. 28.부로 거래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 매출처들에 대한 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이 아니다. 다른 매출처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거래형태를 보이고 있고, 위 두 매출처의 채권액만 제외하더라도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H의 경우 위 추가 매출을 포함하여 2019. 2. 28.까지 모든 매출채권이 회수된 것으로 보이고, G의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9. 1. 15.부터 2019. 2. 28.까지의 회수액이 162,661,635원에 이르며, 다른 매출처들의 경우에도 2019. 6. 30.까지 채권 전액이 회수되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후 상당한 금액이 회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위 매출채권은 C가 자신의 채권으로 보고 이를 장부에 기재한 것이고, 그중에는 매출처와 분쟁이나 매출처의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해 회수가 어려운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실제 회수된 금액 부분(이 사건 매매계약 후 추가 매출액을 고려하더라도 기존 매출채권에 먼저 충당되었을 것으로 보인다)은 C의 적극재산임이 분명하고, 단기간 내에 회수되지 아니한 금액이 있다고 하여 이를 모두 악성채권이라 단정할 수 없다. 위 회수액 565,302,781원은 앞서 인정한 소극재산 총액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2019. 6. 30.까지 회수된 금액임을 고려할 때 최종적으로 회수된 금액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직후로도 상당한 액수의 추가 매출을 발생시켰고, 이를 통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상당한 규모의 재고자산이 존재하였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소결론 이 사건 부동산이 매도된 후에도 채무자 C의 소극재산 합계액이 적극재산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바, C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로 인해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기거나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권노을

별지

총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2022. 6. 3.자 준비서면을 통해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165,856,578원에 달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주장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